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96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6. 27. 정영환 의원 등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5. 7. 4.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25. 7. 16.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 정영환 의원)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를 명확화하여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안 제48조제5항)
 - 회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게재
-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 신설(안 제79조제4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33호
 - 예고기간: 2025. 6. 27.(금) ~ 7. 3. [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래훈)

-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회의록 공개의 신속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방청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하는 것임.
- 적정성 및 타당성
 - 정보공개와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는 주민의 민주적 참여 확대와 의회 신뢰 제고에 부합함.
- 기대효과
 - 주민의 의회 참여 및 정보 접근성 확대
 - 방청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 강화
 - 회의록 관리의 체계화 및 현대화
- 고려 및 보완 사항
 - 임시회의록과 확정 회의록 간 차이에 대한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명확한 안내 필요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정보공개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개선안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시행 과정에서는 임시 회의록의 신뢰성 확보와 방청 제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나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7. 16.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